

#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

(제 9 편 추가설비)

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장 하역설비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&lt;생략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절 검사</b></p> <p>201. &lt;생략&gt;</p> <p>202. 하역설비의 검사</p> <p>1. 검사의 종류</p> <p>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(1) 등록검사</p> <p>(가) 제조중등록검사</p> <p>(나) <u>제조후등록검사</u></p> <p>&lt;이하 생략&gt;</p> <p>203. 등록검사</p> <p>1. 도면 및 기타자료의 제출 【지침 참조】</p> <p>(1) ~ (2) &lt;생략&gt;</p> <p>(3) 새로이 제작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(가)부터 (사)에 나열된 관련 도면 및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의 사양서</p> <p>(나) (2)호에 규정된 승인용도면 및 자료에 관련된 계산서 또는 점검표</p> <p>(다)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 작동지침서</p> <p>(라) 비파괴시험방안서</p> <p>(마) 하중시험방안서</p> <p><del>(바) 석면이 포함된 채료가 사용되는 경우 위치 및 기타 상세정보를 포함한 자료</del></p> <p><u>(사)</u>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장 하역설비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&lt;생략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절 검사</b></p> <p>201. &lt;생략&gt;</p> <p>202. 하역설비의 검사</p> <p>1. 검사의 종류</p> <p>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(1) 등록검사</p> <p>(가) 제조중등록검사</p> <p>(나) <u>제조중 이외의 등록검사</u></p> <p>&lt;이하 생략&gt;</p> <p>203. 등록검사</p> <p>1. 도면 및 기타자료의 제출 【지침 참조】</p> <p>(1) ~ (2) &lt;생략&gt;</p> <p>(3) 새로이 제작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(가)부터 (사)에 나열된 관련 도면 및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의 사양서</p> <p>(나) (2)호에 규정된 승인용도면 및 자료에 관련된 계산서 또는 점검표</p> <p>(다) 하역장치 및 하역램프 작동지침서</p> <p>(라) 비파괴시험방안서</p> <p>(마) 하중시험방안서</p> <p><u>(바)</u>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 및 자료</p>

현행	개정안
<p>(4) <u>하역설비의 제조후등록검사 시기에</u>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 및 자료는 (2)호 및 (3)호에 규정된 바와 같다. 다만, 우리 선급이 승인하는 경우, 이러한 도면 및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관련된 과거의 검사기록이나 증서를 제출받고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&lt;이하 생략&gt;</p>	<p>(4) <u>하역설비의 제조중 이외의 등록검사 시에</u>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 및 자료는 (2)호 및 (3)호에 규정된 바와 같다. 다만, 우리 선급이 승인하는 경우, 이러한 도면 및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관련된 과거의 검사기록이나 증서를 제출받고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&lt;이하 현행과 동일&gt;</p>

현 행	개 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7 장 잠수설비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~ 제 8 절 &lt;생략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9 절 압축기</b></p> <p>901. 일반사항</p> <p>1. ~ 2. &lt;생략&gt;</p> <p>3. 압축기에 대한 성능시험은 607. 및 <u>KS V 4000</u>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7 장 잠수설비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~ 제 8 절 &lt;생략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9 절 압축기</b></p> <p>901. 일반사항</p> <p>1. ~ 2. &lt;생략&gt;</p> <p>3. 압축기에 대한 성능시험은 607. 및 <u>BS EN 12021</u>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.</p>

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  
(제 9 편 추가설비)



현 행

개 정

제 2 장 하역설비

제 2 장 하역설비

제 1 절 일반사항

제 1 절 일반사항

101. ~ 102. <생략>  
 103. 배치, 구조, 재료 및 용접  
 1. <생략>  
 2. 재료  
 (1) ~ (5) <생략>

101. ~ 102. <현행과 동일>  
 103. 배치, 구조, 재료 및 용접  
 1. <현행과 동일>  
 2. 재료  
 (1) ~ (5) <현행과 동일>

표 9.2.1 저온에 노출된 강재의 종류

표 9.2.1 저온에 노출된 강재의 종류 (2019)

설계온도 $T$ ( $^{\circ}\text{C}$ )	재료두께 $t$ (mm)				
	$t \leq 10$	$10 < t \leq 20$	$20 < t \leq 25$	$25 < t \leq 40$	$40 < t$
$-10 \leq T$	A/AH		B/AH	D/DH	E/EH
$-20 \leq T < -10$	B/AH	D/DH	E/EH		
$-30 \leq T < -20$	E/EH			RL24A	RL24B
$-40 \leq T < -30$	RL24A		RL24B		*
$-50 \leq T < -40$	RL24B		*		
(비고) <생략>					

설계온도 $T$ ( $^{\circ}\text{C}$ )	재료두께 $t$ (mm)				
	$t \leq 10$	$10 < t \leq 20$	$20 < t \leq 25$	$25 < t \leq 40$	$40 < t$
$-10 \leq T$	A/AH		B/AH	D/DH	E/EH
$-20 \leq T < -10$	B/AH	D/DH	E/EH		
$-30 \leq T < -20$	E/EH			RL235A	RL235B
$-40 \leq T < -30$	RL235A		RL235B		*
$-50 \leq T < -40$	RL235B		*		
(비고) <현행과 동일>					

<이하 생략>

<이하 현행과 동일>

현 행	개 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9 장 화물증기 배출제어장치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절 VEC2 부호 요건</b></p> <p>302. 넘침경보장치</p> <p>1. &lt;신설&gt;</p> <p>1. <b>규칙 302.</b>의 1항 (5)호에서 화물감판지역에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가시가청의 경보를 설치하여야 한다. ↓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9 장 화물증기 배출제어장치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절 VEC2 부호 요건</b></p> <p>302. 넘침경보장치</p> <p>1. <b>규칙 302.</b> 1항 (1)호와 (3)호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계측장치와 고액면 경보장치의 센서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2. <b>규칙 302.</b>의 1항 (5)호에서 화물감판지역에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가시가청의 경보를 설치하여야 한다. ↓</p>